

#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임용지침

**제1조** (목적) 이 지침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한 비정년트랙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의 자격, 계약 및 처우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9.3.1.>

**제2조** (교원의 종류) (교원의 종류) ① 교육전담교수 : 강의와 학생지도를 담당한다.<개정 2007.9.20, 2010.10.12., 2012.12.18.>

② 강의전담교수 : 강의와 학생지도를 전담한다.<개정 2010.10.12.>

③ 실습전담교수 : 강의와 학생지도, 실습지도를 전담한다.<개정 2011.11.1.>

④ 연구교수 :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한다.<개정 2010.10.12., 2014.2.28.>

⑤ 원어민교수 : 외국어분야의 교육을 목적으로 임용된 외국어가 모국어인 교원<개정 2012.12.18.>

⑥ 산학협력중점교수: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, 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,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임용되고 평가받는 교원<신설 2016.10.20.>

⑦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‘비정년트랙’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3조** (자격 및 임용절차) ①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12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<개정 2009.3.1.>

② 강의전담교수는 해당 분야의 학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.<신설 2010.10.12.>

③ 실습전담교수는 해당 분야의 학문성과 현장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.<신설 2011.11.1.>

④ 연구교수는 대학과 대학의 연구소 등에서 외부기관(단체 및 개인)으로부터 지원되는 연구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임용 계약이 만료된다. <개정 2013.2.18., 2014.2.21., 2017.8.16.>

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해당분야의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중에서 선임한다.<신설 2016.10.20.>

⑥ 교원의 신규임용은 전임교원 신규임용 절차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공개강의는 실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4조** (근무) ① 교육전담교수의 주당 수업책임시수는 12시간(현장실습 1학점 포함)으로 하며 책임시간 외의 강의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.<개정 2010.10.12., 2015.2.28>

② 강의전담 교수의 경우 주당 수업책임시수는 12시간으로 하며, 책임시간 외의 강의시간에 대하여는 초과 강의료를 지급한다.<개정 2007.9.20, 2009.3.1., 2009.9.1., 2010.10.12., 2011.3.1., 2011.11.1., 2013.9.1>

③ 실습전담교수의 주당 수업책임시수는 12시간(현장실습 1학점 포함)으로 하며, 책

임시간 외의 강의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.<신설 2011.11.1., 개정 2016.9.2>

- ④ 연구 교수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. 연구교수는 총장의 허락을 받아 주당 6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으며, 그 강의시간은 기본연봉에 포함된다.<개정 2010.10.12., 2014.2.21., 2014.2.28.>
- 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현장경험을 전수하기위해 특강, 현장실습지도, 취업상담등 다양한 형태의 학생지도를 위하여 책임시수는 0~6학점으로 할 수 있다. 다만 강의는 현장실습, 목회실습, 취업·창업 및 산학협력관련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다.<신설 2016.10.20.>
- ⑥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득한 후 외부 출강할 수 있다.
- ⑦ 교육전담교수는 학과(부)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과 및 학부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.<개정 2010.10.12.>

**제5조 (평가 및 처우)** ① 교원은 연구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.<개정 2005.9.1, 2008.4.3, 2010.10.12.>

- ② 교육전담교수와 실습전담교수, 강의전담교수는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의 교육, 학생지도 및 근태에 관한 평가를 받는다. 단,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활동중심의 학생취업 및 창업지도등의 임무를 포함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재임용평가를 받는다.<개정 2010.10.12., 2011.1.31., 2011.11.1., 2012.12.18., 2016.10. 20.>
- ③ 교원의 연봉은 교원 연봉제운영에 관한 내규에 준하여 총장이 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다.<개정 2006.5.8, 2007.3.1, 2007.9.20, 2008.3.1, 2009.3.1.>
- ④ 외국인교수의 경우 연구 및 교육경력과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총장이 임용직급 및 연봉, 연봉외 급여를 정할 수 있다.<신설 2008.3.1>
- ⑤ 원어민교원의 경우 주택 또는 주택보조비를 총장의 결재로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07.9.20, 개정 2008.3.1>
- ⑥ 실습전담교수는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심사는 정년트랙교수의 승진심사절차에 준하고, 그 연봉은 강의전담교수제도의 취지에 기초해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<신설 2010.10.12., 개정 2011.9.21., 2011.11.1.>
- ⑦ 연구교수의 연봉은 연구 프로젝트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11.3.1., 개정 2014.2.28.>
- ⑧ 연구교수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본 대학 전임교원에게 지원하는 교내학술연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.<신설 2017.8.16.>

**제6조 (재계약)** ① 교육전담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재계약 심사 후 연장할 수 있으나 재임용 되지 않을 경우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. 재계약 심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0.10.12., 2012.12.18.,2015.2.28.>

1) 연구평가

인문사회계: 교수업적평가 연구점수를 기준하여 600점이상(단, 등재(후보)지 이상 게재)<개정 2016.10.20.>

예능계: 비중있는 독주회 2회 이상

(실용음악과는 연주를 위한 공중과 방송출연 4회 이상으로 대체가능)

2) 업적평가 : 교수업적평가 교육 영역 기준 점수의 80%이상 취득, 봉사영역 3-1-4 예배의 경우 60%이상 참석 <개정 2014.2.21.>

3) 근태평가 : 별표1의 근태평가표로 평가하여 75점 이상 취득

② 강의전담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재계약 심사 후 연장할 수 있으나 재임용 되지 않을 경우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. 재계약 심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. <신설 2011.11.1.,2012.12.18.,2015.2.28.>

1)연구평가

인문사회계: 교수업적평가 연구점수를 기준하여 600점이상(단, 등재(후보)지 이상 게재)<개정 2016.10.20.>

예능계: 비중있는 독주회 2회 이상

(실용음악과는 연주를 위한 공중과 방송출연 4회 이상으로 대체가능)

2) 업적평가 : 교수업적평가 교육 영역 기준 점수의 80%이상 취득, 봉사영역 3-1-4 예배의 경우 60%이상 참석 <개정 2014.2.21.>

3) 근태평가 : 별표1의 근태평가표로 평가하여 75점 이상 취득

③ 실습전담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재계약 심사 후 연장할 수 있으나 재임용 되지 않을 경우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. 재계약 심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10.12.,2011.11.1.,2012.12.18.,2015.2.28.>

1) 연구평가

인문계: 교수업적평가 연구점수 기준 300점 이상 및 실습지도 연구보고서(1년 기준)

예능계: 비중있는 독주회 2회 이상 및 실습지도 연구보고서

(실용음악과는 연주를 위한 공중과 방송출연 4회 이상으로 대체가능)

2) 업적평가 : 교수업적평가 교육 영역 기준 점수의 80%이상 취득, 봉사영역 3-1-4 예배의 경우 60%이상 참석

3) 근태평가 : 별표1의 근태평가표로 평가하여 75점 이상 취득

④ 연구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재계약 심사 후 연장할 수 있으며,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연 퇴직한다. 단, 연구비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임용계약이 만료된다. <개정 2010.10.12.,2012.12.18.,2014.2.21.,2014.2.28.>

1)연구평가

인문사회계: 교수업적평가 연구점수를 기준하여 600점이상(단, 등재(후보)지 이상 게재) 및 연구프로젝트보고서(1년기준)<신설 2016.10.20.>

2) 근태평가 : 별표1의 근태평가표로 평가하여 75점 이상 취득, 봉사영역 3-1-4 예배의 경우 60%이상 참석

⑤ 원어민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재계약 심사 후 연장할 수 있으나 재임용 되지 않을 경우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. 재계약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) 업적평가 : 교수업적평가 교육 영역 기준 점수의 80%이상 취득, 봉사영역

3-1-4 예배의 경우 60%이상 참석 <개정 2014.2.21.>

2) 근태평가 : 별표1의 근태평가표로 평가하여 75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한다.<개정 2010.10.12., 2011.11.1., 2012.12.18.>

⑥ 삭 제 <2011.1.28.>

⑦ 삭 제 <개정 2010.10.12., 2014.2.21.>

⑧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재계약 심사 후 연장할 수 있으나 재임용 되지 않을 경우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. 재계약 심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.<신설 2016.10.20.>

1) 연구평가

산학협력실적보고서(1년기준)

2) 업적평가 : 봉사영역 3-1-4 예배의 경우 60%이상 참석

3) 근태평가 : 별표1의 근태평가표로 평가하여 75점 이상 취득

**제7조 삭제** [본조신설 2010.12.11., 개정 2011.9.21., 2014.2.21.]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지침의 개정) 이 지침은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.<개정 2007.9.20>

## 부 칙

① 이 지침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① 이 지침은 200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① 이 지침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원어민교원에 한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6조 ④항은 2011년 3월 1일 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.
- ③ (경과조치) 이 법의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이 법에 의해 교육전담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 ) 이 변경 지침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 ) 이 변경 지침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 ) 이 변경 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지침은 201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지침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지침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2014.1.1.이전에 임용된 비정년트랙(교육전담)의 정년전환은 임용당시 규정에 따른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며, 2015년 3월 1일 재임용 및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1>

## 교원 근태평가조서(비정년트랙)

피평정자	소속 : 직위 : 성명 :	확 인 자	위원장 : (인)			
구분	평 정 항 목	평 가				
평정영역		수	우	미	양	가
1.교수의 인성과 신앙 (40)	① 교수자질 및 품위유지(15)	15	12	9	6	3
	② 동료교수와의 인화력(15)	15	12	9	6	3
	③ 신앙 및 교회생활(10)	10	9	8	7	6
2.교수의 적성 및 역량 (60)	① 강의 역량(15)	15	12	9	6	3
	② 학생지도(15)	15	12	9	6	3
	③ 근무태도 및 대학 정책 협력(15)	15	12	9	6	3
	④ 계약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(15)	15	12	9	6	3
총 평						
평정자	직 명		성 명			(인)

\* 각 평가 영역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승진, 정년전환은 80점 이상을,  
 재임용은 75점 이상을 합격 평점으로 한다.

<별표2>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신규임용자 및 재계약자 수업책임시간

구 분	수업책임시간수
교육전담교수	12시간 (현장실습 1학점 포함)
실습전담교수	12시간 (현장실습 1학점 포함)
강의전담교수	12시간
원어민 교원	15시간